

## 결혼 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 대전 충남 사례를 중심으로

김 옥\*

**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와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구체적 사례 소개이다.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갈등에 대한 논의는 이미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 있는 바, 이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문화적 항변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와 여성 인권과의 충돌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대전 충남지역 다문화 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 결과의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성의 역할 및 권리에 관련된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간 충돌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결혼 여성 이민자들의 가족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이러한 실태 파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다. 한편으로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소수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주류 문화와 통합할 필요성과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한국 실정을 감안할 때,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가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결혼 여성이민자, 다문화주의, 여성주의, 문화적 항변, 구성주의 문화관, 문화적 관습, 대전 충남 다문화가정

본 연구는 2012년 사단법인 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원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세 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드림.

\* 배재대, 정치학, wckim@pcu.ac.kr

## 1. 서론

다문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상충된 문화 혹은 가치의 충돌이다. 여기에는 주류 문화와 소수 이민자 문화 간의 충돌도 있지만, 보다 넓게는 주류 및 소수 집단의 문화적 관습과 보편적 가치와의 충돌도 포함된다. 특히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수 이민자 집단이 용인하고 수용하고 있는 문화적 관습 중에 여성의 보편적 인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다중결혼, 강제 결혼, 여성 성기 절제, 강간 당한 여성에 대한 처벌, 명예 살인, 가정 폭력에 대한 용인, 히잡 착용 등은 일부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관습들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다문화주의라는 관점에서 소수 이민자 집단의 문화적 관습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혹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습을 금지해야 할 것인가? 이는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처럼 주류 문화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습이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문화 및 가치의 충돌과 딜레마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주류 문화, 소수 문화, 여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이 세 개가 다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가 이미 자리잡고 있는 서구 사회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 충돌 혹은 가치 충돌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이러한 갈등과 딜레마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점차 심화되어 갈수록, 이러한 문화 혹은 가치 갈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문화적 충돌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대전 충남 지역의 다문화 가정 여성을 중심으로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별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실제 다문화가정 여성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역할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화적 충돌 및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과의 조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숨겨진 문제의 실태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 파악에 근거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본 연구는 모두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2절에서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미국 형사재판에서 적용되고 있는 문화적 항변(cultural defense) 사례를 중심으로 양자 간의 충돌과 해결 방식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대전 충남 지역 결혼 여성이민자들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충돌, 그리고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 간의 갈등을 살펴본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 4절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 2.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 1)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 가능성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주의란 단순히 한 국가사회 내 소수 문화에 대한 관용을 넘어서 이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오킨(Okin, 1999: 2)의 표현을 빌리면, 다문화주의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

의 국가의 맥락에서 소수 문화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들 구성원들의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한 집단 권리(special group rights) 혹은 특권(privileges)을 통해 이들 소수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집단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원주민들, 소수 인종 및 소수 종교 집단, 이민자 집단 등 다양한 소수 집단들이 이러한 특별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권리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원주민들의 경우, 자치권을 주장하거나 정치적 대표성을 특별히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른 소수 집단들은 일반 법률로부터 자신들이 면제될 것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집단에게만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들(예를 들면, 복혼제 등)을 허용하거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예외적인 대우(예를 들면, 문화적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여성주의와 충돌한다. 대표적인 여성주의학자인 오킨(Okin, 1999)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수 문화는 남성우위적 가부장제적 질서를 강요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수문화에 대한 배려 혹은 보호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구속을 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의한 여성에 대한 구속 및 여성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히잡 착용, 복혼제 관행, 음핵절제수술 허용,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 관습, 부정한 아내 살해에 대한 문화적 용인 등 다양한 문화적 관습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은 문화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자들은 문화를 근본적인 사회적 재화로 본다. 문화는 자기충족적인 전체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대표적인 다문화주의자인 킴리카(Kymlicka, 1995)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에서 오는 안전을 제공해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

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가 여성에게 미치는 피해를 강조하는 학자들 또한 문화에 대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문화를 통합적이고 분명한 경계가 있는 자기충족적인 전체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킨은 다문화주의를 비판함에 있어서 문화를 획일적으로 가부장적인 것으로 보면서, 단지 서양 문화보다 소수 문화가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통합적이고 고정적인 시각은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를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만든다. 다문화주의 대(對) 여성주의, 집단 권리 대(對) 여성 권리, 문화 대(對) 성(gender)이라는 표현들은 양자 간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김옥, 2012).

이 같은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한 새로운 시각 중의 하나는 구성주의 견해이다. 구성주의 문화관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송(Song, 2007)에 따르면, 문화는 통합된 전체가 아니며 고정적인 것 또한 아니다. 문화는 내부적 경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복잡한 역사적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현재의 상황은 다문화주의적(multicultural)이라기보다는 문화간주의적(intercultural)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 문화관이 상정하고 있는 문화 내부에서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는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자 모두 주류(혹은 다수)와 소수의 경쟁에서 소수(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 여성주의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평등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문화주의가 여성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는 내부적 소수(internal minority)의 문제 혹은 소수 내 소수(minority within minority)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Song,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의 충돌은 원칙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은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소수 문화의 일부 관습이 여성인권과 충돌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소수 문화의 절대적 용인이나

부정과 같은 원칙적인 해결보다는 사안별로 여성의 권리와 소수 집단의 권리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민주적 심의(democratic deliberation)를 적용하여, 해당 사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Benhabib, 1996; 현남숙, 2009).

## 2)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 사례: 미국의 문화적 항변

앞에서 논의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간의 충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미국의 형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문화적 항변은 매우 적절한 사례를 제공한다.<sup>1</sup> 문화적 항변은 다문화주의가 주장하는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과 보호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또한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충돌하는 권리를 민주적 심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화적 항변(cultural defense)이란 피소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한 가지 수단인데, 법률을 위반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오랫동안 소속되어 온 문화적 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서, 현존 법질서가 추구하는 가치를 부정하려는 의도 없이 자신의 의식 속에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가치체계를 자연스럽게 따른 행위였고, 따라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감(減)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차동욱, 2006).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항변은 다문화주의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화적 항변은 소수 인종 혹은 소수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국가의 형사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들이 그 사회 주류 문화의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적 항변이라는 제도는 주류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

1 여기서 소개되는 문화적 항변 사례는 김옥(2012)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문화적 항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차동욱(2006)을 참조하라.

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하나로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형사 재판에서 이러한 문화적 항변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것이 모든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현 단계에서 문화적 항변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강조해야 할 점은 문화적 항변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평결이 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은 미국에서 문화적 항변이 이슈가 된 다섯 개의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소수문화 내에서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억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앞에 있는 두 사례이다. 그 다음의 두 사례도 가부장제적 성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여성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었다. 마지막 사례는 단순히 신체접촉에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위의 두 사례에서 문화적 항변의 인정은 미국내 여성주의자들의 많은 반

표 1. 미국에서 문화적 항변의 대표적 사건들

사건	사건 개요	문화적 항변 내용 및 인정 여부
People v. Moua (1985 California)	몽고족 출신 23세 남성이 19세 몽고족 여성을 납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유괴와 강간죄로 남성을 고발.	몽고족 문화에는 포획 결혼(marriage by capture)이 있으며, 그 전통에 따르면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거부는 의례적인 행동임. 인정됨.
People v. Chen (1989 New York)	중국계 남자가 부인의 혼외정사를 발견하고는 아내를 살해함.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남성은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따라서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인정됨.
People v. Kimura(1985 California)	일본계 여인이 남편의 부정행위에 극도의 수치심을 느껴 자식과의 동반자살 시도했으나 아이들만 사망.	일본의 전통문화에서는 이러한 경우 자식과의 동반자살이 용인됨. 인정됨.
People v. Wu (1991 California)	중국 여인이 사생아를 낳자 아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중국 전통신앙에 따라 피의자는 사후세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 인정됨.
State of Maine v. Kargar(1996 Maine)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 남성이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성기에 입을 맞추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자식에 대한 애정 표시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고 주장. 인정됨.

자료: 김옥(2012)에서 빌려 옴. 원래는 차동욱(2006, 336-337)을 기본으로 하여 Song(2007)을 참조하여 수정한 것임.

발을 불러일으켰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23세 몽고족 남성이 19세 몽고족 여성을 납치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모우아를 유괴 및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자신을 변호함에 있어서, 몽고족 남성은 자신이 단지 몽고족의 전통적인 결혼 의식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몽고족 전통 문화 중에 포획결혼(marriage by captur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통에 따르면 결혼을 할 의지가 있는 여성이라도 자신의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남성은 여성의 저항을 비동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정은 이러한 문화적 항변을 인정하여, 강간과 유괴 혐의를 기각하였다. 대신 그보다 훨씬 경미한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죄를 적용하여 120일간 투옥과 1,000달러 벌금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중국계 이민자가 자신의 부인이 혼외정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몇 주가 지난 후 그는 자신의 부인을 때려서 살해하였다. 변호인 측은 인류학자의 증언을 빌려서 중국 문화에서는 부인의 혼외정사에 대해 폭력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용인할 만한 반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문화적 항변을 인정하였고, 중국계 이민자 남성은 2급 고살죄(manslaughter), 즉 과실치사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5년 집행유예로 투옥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죄에 주어지는 형량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벌이었다.

이 두 사례에서 문화적 항변의 인정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수 집단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그에 따라 미국 주류문화의 가부장제적 성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했을 가능성(소위 부메랑 효과)이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적 항변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자들의 참여와 의견이 부족했으며, 소수 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경쟁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항변은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혹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다문화주의가 주장하는 소수문화에 대한 특권 부여는 없어야 할 것인가?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 자체가 아니

라 일부 억압적인 관행이다. 따라서 소수 문화 혹은 이를 보호하는 장치인 문화적 항변을 절대적으로 용인하거나 부정하는 것보다는 각 사안별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문화적 항변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앞의 표 1에서 언급한 1996년 메인 주에서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 사건(State of Maine v. Kargar)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만약 문화적 항변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면, 피의자는 자식에 대한 애정 표시 행동으로 인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알바니아 출신 무슬림 아버지가 공공 체육관에서 자신의 네 살 짜리 딸을 만졌다고 고소를 당했는데, 알바니아 문화 전문가가 그 행동이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언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았다(Song, 2007). 소수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규범적으로 옳은 일이다(김옥, 2012).

### 3. 대전 충남 지역 결혼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에 대한 경험 분석

#### 1)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주의와 여성인권의 충돌

앞에서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미국의 소수 이민 자집단에게 적용되어 온 문화적 항변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와의 관계 및 충돌을 구성주의적 문화관에 입각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한 후,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서 미국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화적 항변 사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두 사례 모두 소수 문화 인정과 여성 인권과의 충돌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의 충돌은 주로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으며,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신장

되어 있는 미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다문화주의와 여성 인권이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먼저, 한국의 사례는 미국 등 서구 자유민주국가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단 한국은 주류 문화 자체가 여전히 성차별적인 성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주류문화보다 이민자 집단의 소수문화가 더 가부장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게다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담고 있는 소수 문화에 대한 관용과 보호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주류 문화, 소수 문화, 여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이 3자가 다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이민자가 결혼이민자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한 가정 폭력 문제도 (조현옥, 2012) 단지 여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 간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두 문화 간 상호작용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 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경우 앞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문화관은 문화를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간 관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선진 국가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김옥, 2011).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의 갈등 가능성, 그리고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간 갈등과 상호작용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점차 심화되어 갈수록, 이러한

문화간 갈등과 상호작용 및 그에 따른 여성 문제 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이번 한국 다문화가정에서의 문화적 충돌과 그에 따른 여성 인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경험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주로 대전 충남 지역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일종의 예비연구(pilot study)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표본의 선정방법과 표본 수, 자료의 성격 등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한국 사회의 문화 간 충돌과 그에 따른 여성의 인권 피해 가능성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설문조사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대전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60명에 대해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조사 방법 및 자료의 성격을 설명한 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다변인 분석을 시도한다.

### (1) 조사 방법 및 자료의 성격

본 설문조사는 배재대학교 다문화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수강 중인 대전,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6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에 실시되었다. 물론 표본은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은 확보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이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표본의 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의 통계적 분석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하나는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들로서, 결혼 전 국적, 연령, 입국 년도, 자녀의 수, 직업 여부 등을 물었다. 다른 하나는 응답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결혼 전 국가에서의 문화적 관습과 한국의 문화적 관습과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한 여성인권 침해 가능성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지 전체는 <부록>을 참고하라.

## (2) 현황 분석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40대 이상의 순이었다. 결혼 전 국적을 보면,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23명과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었다. 한국 거주 년수는 대부분이 5년 미만이었으며, 6년 이상 거주자는 17명(28.8%)에 머물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수였으며,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18명이나 되었다.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종교가 없는 응답자도 23명이나 되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직업을 가진 사람은 9명(15.3%)에 불과했다. 자녀 수의 경우, 자녀가 1명인 응답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없음이 20명, 자녀 2명을 가진 응답자가 11명,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는 2명이었다.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3명(5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려운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명(32.2%), 매우 어렵다는 응답자는 6명(10.2%), 그리고 매우 여유롭다는 응답자는 1명(1.7%)에 불과했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을 볼 때, 이번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민자들은 일반 결혼이민자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형편도 여유롭다고 응답한 사람이 어렵다고 말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 다만 직업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15.3%로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활동 참여는 미미한 수준인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빈도(명)	퍼센트(%)
〈연령〉		
20대	34	58.6
30대	19	32.8
40대 이상	5	8.6
〈결혼 전 국적〉		
베트남	23	39.0
중국	18	30.5
필리핀	8	13.6
캄보디아	4	6.8
우즈베키스탄	3	5.1
기타 국가	3	5.1
〈한국 거주 연수〉		
2년 미만	18	30.5
2-5년	24	40.7
6년 이상	17	28.8
〈학력〉		
중학교 이하	9	15.3
고등학교	32	54.2
대학교 이상	18	30.5
〈종교〉		
기독교(개신교+천주교)	13	22.0
불교	21	35.6
기타 종교	2	3.4
종교 없음	23	39.0
〈직업 여부〉		
직업 있음	9	15.3
직업 없음	50	84.7
〈자녀 수〉		
없음	20	33.9
1명	26	44.1
2명	11	18.6
3명 이상	2	3.4
〈경제적 형편〉		
매우 어렵다	6	10.2
어려운 편이다	19	32.2
여유 있는 편이다	33	55.9
매우 여유 있다	1	1.7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적 관습 차이와 관련한 주요 설문에 대한 응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결혼 전 살던 국가와 한국에서 문화적 관습의 차이를 느끼고 있으며(86.4%),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81.4%)가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주 여성의 이주 전 문화와 한국의 문화 간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문화적 관습의 차이가 발생할 때, 어느 쪽 문화가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수(36명, 61%)가 두 문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결혼 전 문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 비해(5명, 8.5%), 한국 문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18명, 30.5%)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국의 문화를 지키기보다는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 모두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 가정에서 살아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 전 살던 국가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할 때, 어느 쪽 문화가 더 여성에게 우호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29명으로 50%를 차지했다. 결혼 전 문화가 더 우호적이라는 응답자와 한국 문화가 더 우호적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15명, 14명으로 거의 비슷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문화가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 비해 남성 중심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설문 조사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 설문조사의 한계인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로 심층 면접에서는 한국 문화의 가장장제적 성격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다.

반면에, 어떤 문화의 남성이 여성에게 더 친절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슷하더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 남성이 더 친절하다는 응답비율이(37.9%) 결혼 전 국가의 남성이 더 친절하다는 응답비율(15.3%)보

다 오히려 더 높았다. 한국 문화가 가부장제적이기는 하나, 여성에 대한 배려나 친절 면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심층 면접에서도 한국 남성이 한편으로는 권위적이면서도 동시에 친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다.

한국에 살면서 여성으로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해서는 가끔 있다라는 응답자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없다는 응답자가 27.6%, 자주 있다는 응답자는 10.3%에 불과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성 인권 침해 경험을 물었는데, 없다가 50.0%, 가끔 있다가 43.1%, 자주 있다가 6.9%를 기록했다. 결혼이민자 중의 상당수는 가정 밖에서 여성 인권이 침해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는데, 남편 간섭을 느낀 경험이 있는 비율이(60.3%) 다소 높기는 하나, 남편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혹은 협박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24.1%) 그리 높지 않았다. 남편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등하다는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위에 있다라는 응답(20.7%)이 아래에 있다는 응답(13.8%)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남편과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만족하는 응답자 비율(58.6%)이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41.4%)보다 높게 나왔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100% 솔직한 응답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심층 면접에서도 남편의 폭력이나 폭언 경험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의 경우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의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관계와 남편을 포함한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는데, 역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로 만족하지 않음이 13.8%에 불과했고, 만족하는 편 46.6%, 그리고 매우 만족 39.7%를 차지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이보다 다소 낮았는데, 매

우 불만족 5.2%, 별로 만족하지 않음 24.1%, 만족하는 편 44.8%, 매우 만족 25.9%를 차지했다.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 생활에서의 불만족이 상당 부분 남편이 아니라 시댁 식구나 자녀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인데, 이는 뒤에서 살펴 볼 심층 면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3)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다변인 분석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문화적 관습 차이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요인으로서 성생활 만족도라는 요인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 통제요인으로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도 추가되었는데, 연령, 학력, 한국 거주 연수, 직업 여부, 경제적 형편 등이 모델에 포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체 모형을 보면  $R^2$ 는 .410으로 매우 높으며, F 값은 5.787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학력, 직업 여부 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연령과 경제적 형편 변수의 경우  $p < .09$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관습 차이로 인한 어려움 경험 요인은 매우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p < .01$ ). 예상대로, 부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준화계수(베타)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이 변수는 .337로서 가장 높는데, 이는 이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른 변수의 영향력에 비해 가장 큰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관습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가 결혼여성이민자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다변인 분석(다중 선형 회귀분석)

변수	B(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베타)	t 값	유의확률
상수	3.260	1.162		2.807	.007
연령	-.023	.013	-.206	-1.778	.081
학력(초등 1, 대학교 이상 4)	.179	.118	.170	1.513	.136
직업 여부(있음 1, 없음 2)	-.139	.298	-.058	-.468	.642
경제적 형편 (매우 어려움 1, 매우 넉넉함 4)	.236	.132	.199	1.782	.081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없음 1, 자주 경험 3)	-.672	.235	-.337	-2.858	.006
성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매우 만족 4)	.301	.109	.315	2.761	.008

$R^2 = .410$ , 수정된  $R^2 = .339$

$F = 5.787$ (유의확률 .000)

남편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변수로서 추가된 성생활 만족도 또한 매우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p < .01$ ). 물론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에 있어서도, 이 변수는 .315로 문화적 관습 차이로 인한 어려움 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연령과 경제적 형편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결혼전 문화와 한국 문화간 문화적 관습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과의 성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문화간 갈등 요인, 그리고 성생활 만족도로 대표되는 남편과의 남녀관계의 성격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3) 심층면접 자료 분석

앞에서의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충청 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결혼 이민자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통해 앞에서의 설문 조사 자료의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설문을 통해 물어보지 못한 민감한 문제들을 추가로 물어보았다.

심층 면접은 11월 15일 진행되었으며, 면접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는 중국 출신 2명, 베트남 출신 3명, 네팔 출신 1명, 그리고 우즈벡 출신 1명 모두 7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한 지 4년 이상 되었으며, 한국어 실력도 상당히 능숙한 편이었다. 또한 남편도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녀도 1-2명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다문화가정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층 면접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표피적으로 물었거나 너무 민감하여 묻지 못한 다양한 질문을 하였는데, 참가자들은 매우 솔직한 응답을 해주었다.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한국의 문화가 자국의 문화에 비해 남성중심적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이것이 그들의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의 옷차림에 대한 지나친 간섭, 남녀가 밥상을 따로 차려 식사하는 문화적 관습 등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2. 그런데 이들 모두가 동시에 동의하고 있는 점은 남편보다는 시댁 식구(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훨씬더 가부장제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 세대가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들의 연령이 40대가 대부분인데, 이들만 해도 과거와 같은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상당히 탈피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0대 이상의 시아버

지, 시어머니들의 경우는 여전히 가부장제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것이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더 많은 고통을 준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누운 채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달라고 시킨다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아마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4.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오히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았으며, 남편과의 성생활에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들의 남편이 결혼 전 국가의 남성에 비해 상당히 친절하고 다정한 편이라고 털어놓았다. 물론 가끔 크게 소리를 내어 다투기도 하지만,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한 참가자는 없었다. 적어도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이들이 지나치게 가부장제적이라고 느끼거나, 그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5. 남편과의 관계 자체에는 대부분 참가자들이 만족하지만, 다른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참가자는 남편과 성생활이 만족스럽기는 하나 다른 가족들 눈치가 보여 성생활을 제대로 갖지 못하며, 이것이 남편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는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시댁 식구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 때문이라며, 만약 시댁 식구만 없다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심층면접 조사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전체 다문화가정 여성들로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여성들 중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거

나 이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2007년 발생한 베트남 출신 후안마이가 입국한 지 두 달 만에 술에 취한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가 18대 부러진 채 사망한 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조현옥, 2012).

## 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협력 필요성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등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가 충돌하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원칙에 의해 소수 이민자의 문화적 관습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관습이 남성우위적 가부장제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그 결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에 의한 여성에 대한 구속 및 여성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히잡 착용, 복혼제 관행, 음핵절제수술 허용,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 관습, 부정한 아내 살해에 대한 문화적 용인 등이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가 충돌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류 문화가 이민자집단의 소수문화에 비해 오히려 더욱 가부장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문화를 용인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남성우위적 가부장제적인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이민자 여성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민자가 대부분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 문화 간 차이에 따른 갈등과 그에 따른 여성 인권 침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는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같

은 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자와 여성주의자 모두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문화적 관습의 보호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수문화의 관용 및 보호와 여성 인권 보호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남성중심적인 주류 문화가 결혼이민자의 소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간 갈등을 해결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정책 제언

그렇다면, 한국에서 주류문화와 소수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지나치게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혹은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양 문화 간 갈등의 해결과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에 보다 더 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옥, 2011).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7년 6월 미국무부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라고 표현하며 비판하였고, 2007년 8월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한국의 순수혈통주의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07년 유엔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결혼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 정

부에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조현옥, 2012).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의 배경에는 한국정부가 결혼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서 동화정책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결혼이주 여성을 한국사회의 부계혈통 중심성을 유지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측면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인 남편인 ‘권리보유자’와 연결된 ‘의존자’로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황정미, 2011).

결혼 여성이민자의 소수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소수문화와 주류문화 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결혼 여성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여성 개인의 인권을 먼저 보호하고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조현옥, 2012).

1.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문제의 해결
2. ‘가족’ 중심의 지원책에서 ‘여성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3.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규제 및 관리 방안 마련
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정
5. 인신매매 처벌법의 제정

일단 이러한 여성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 정책이 확보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한국의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간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특히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인들, 즉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다문화 수용성 조

사에 따르면, 친인척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는 경우, 친구나 직장/학교 동료 중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있는 경우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옥, 2012). 이는 결혼여성이민자의 가정 내 통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부부 모임 등 다양한 사교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가한 결혼여성이민자들은 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정기적인 부부 모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문화 가정 부부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교 모임은 부부간 이해 증진과 행복한 결혼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간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교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다문화가정 공동체의 형성 및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은 다문화가정의 행복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관습의 차이로 인해 부부간 혹은 가족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상담소의 상시적 운영과 활성화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갈등이 심각하게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13.10.15 접수, 2013.11.20 수정, 2013.12.27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김민정, 2010, 여성이민자는 이민의 수혜자인가: 프랑스 내의 북아프리카 출신 여성이민자의 경우, 유럽연구, 28(2).
- 김옥, 2011,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 방안: 북한이탈주민

-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보고서.
- 김옥, 2012,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 미국의 문화적 항변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1(2), 49-71.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 문경희, 2011, 명예살인을 둘러싼 스웨덴의 논쟁과 정책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51(2), 135-159.
- 전복희, 2012, 독일에서 이슬람 이주민의 강제결혼에 대한 논의,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정기학술대회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발표 논문(2012년 5월,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조현옥, 2012, 한국사회의 이주여성 가정폭력에 관한 논의와 대책들,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정기학술대회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발표 논문(2012년 5월,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차동욱, 2006, 문화적 항변과 감정인의 역할 및 소송 전략, 미국학논집, 38(3), 329-365.
- 황영주, 2012,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만남,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정기학술대회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발표 논문(2012년 5월,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 현남숙, 2009,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갈등에 관한 심의민주주의적 접근: S. 벤하비브의 심의민주주의의 다문화 정치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0(3), 439-471.
- Benhabib, Seyla, 1996, *Toward a Deliberative Model of Democratic Legitimacy*, In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hen, Joshua, Howard, Matthew, and Nussbaum, Martha C., 1999, *Introduction: Feminism, Multiculturalism, and Human Equality*, In J. Cohen, M. Howard, and Martha C. Nussbaum(eds.),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hrenreich, Barbara, and Hochschild, Arlie Russell(eds.), 2002,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A Holt Paperback.
- Hondagneu-Sotel, Pierrette(ed.), 2003, *Gender and U.S. Immigration: Contemporary Tren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kin, Susan Moller, 1998,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Some Tensions, *Ethics*, 108(4), 661-84.

Okin, Susan Moller, 1999,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In J. Cohen, M. Howard, and Martha C. Nussbaum(eds.),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Okin, Susan Moller, 2005,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No Simple Questions, No Simple Answers, In Avigail Eisenberg and Jeff Sinner-Halev(eds.), *Minorities within Minorities: Equality, Rights and Divers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ng, Sarah, 2007, *Justice, Gender,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ren, Joyce W.(ed.), 2006,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How Do They/We Work Together?*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The Cultural Practice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Women's Rights: A Case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Daejeon-Chungnam Region

Wook Kim\*

**Abstract** This study comprises mainly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it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clash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and how this conflict might be resolved. It also introduces specific cases of such clashes, focusing on the practice of cultural defense that is being employed in the US criminal justice.

The second part is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 on married female immigrants residing in Daejeon-Chungnam region. With this analysis, we seek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conflicts between different cultural practices in terms of securing women's rights and roles. In particular, the analysis focuses on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the level of the respondents' satisfaction in their relations with family members.

The third part seeks to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that could help to resolve the problems and conflicts that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facing.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need to cooperate clos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secure women's rights for the married female immigrants.

**Keywords** married female immigrants, multiculturalism, feminism, cultural defense, constructionist view of culture, cultural practices, Daejeon-Chungnam multicultural family

---

\* Paichai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wkim@pcu.ac.kr